

[별표 7]<개정 1994.2.3, 1995.8.31>

검사대상기기(제31조관련)

구 분	검사대상기기명	적 용 범 위
기 관	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	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. 1. 최고사용압력이 1kg/cm ²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mm이하이며 길이가 600mm이하인 것. 2. 최고사용압력이 1kg/cm ²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m ² 이하인 것. 3. 관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5m ² 이하인 것 .
압력용기	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	별표 1의 압력용기 적용범위에 따름
요 로	철금속가열로	정격용량이 50만kcal/h를 초과하는 것.